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64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정일영 · 최민희 · 이기현
권향엽 · 박지원 · 안도걸
조인철 · 김교홍 · 황정아
문금주 · 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저소득층 신혼부부는 공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
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려
는 것입니다(안 제52조제7항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제59조의4제9항”을 “제59조의4제12항”으로 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한다.

- ⑤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2.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신혼부부의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이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에 따른 공제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로 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2.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신혼부부의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이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에 따른 공제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신 설>

<신 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⑧ (생략)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⑨ -----제5항-----

-----.

⑩·⑪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⑫ -----

-----.

1. -----
제9항-----

2.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⑬ -----제12항-----

-----.

⑭ (현행 제11항과 같음)